

저작권법 시행규칙

<목 차>

1. 전문경영인의 요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양성미
	담당부서 (과)	저작권산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최영진		연락처	044-203-2482
	과장	안미정		이메일	mymariah20@mail.go.kr

2026. 08. 19. 작성

저작권정책관

성명 :

최영진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문경영인의 요건									
	2.규제조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3.위임법령	저작권법 제106조제7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8.24~2026.09.0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개정 저작권법(' 26.4.28.)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선임해야 함 － 이에 따라 전문경영인의 자격요건(인정 경력, 종사 기간 등)을 정함									
	7.규제내용	○ 전문경영인의 요건 설정 －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전문경영인의 자격요건을 마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보상금수령단체 ○ 이해관계자 :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등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저작권신탁관리업자, 보상금수령단체</td><td>총 13개</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보상금수령단체	총 13개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보상금수령단체	총 13개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전문경영인 요건의 명확한 설정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 선임 기반 마련, 단체 운영의 전문성·투명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전문경영인 선임을 위한 행정적 부담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보상금수령단체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							
		주요내용	○ 요건에 부합하는 전문경영인 선임을 위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나, 전문성과 역량을 인력의 선임을 통해 단체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저작권 관리 체계의 건전성을 제고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9조의6(전문경영인의 요건) 법 제106조 제7항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저작권 업무, 조직 경영·관리 업무 또는 행정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u>문화예술이나 문화산업 관련 단체 또는 업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u> 2. <u>저작권 위탁관리업체 또는 보상금수령 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해당 단체 현 재직자는 채용공고 3개월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u> 3. <u>민간기업체에서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u> 4. <u>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u> 5. <u>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u>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에서는 자격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선임하도록 함
- 개정된 「저작권법」이 전문경영인의 자격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제106조제7항, '26.10.29. 시행 예정)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전문경영인의 자격요건 규정
	내용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전문경영인은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함
규제대안2	대안명	전문경영인의 자격요건 미규정
	내용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전문경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업계의 자율에 맡김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전문경영인의 최소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성과 업무수행 역량을 갖춘 인력의 선임 기반을 마련하고 단체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	요건에 부합하는 전문경영인 선임을 위한 행정적 부담 발생
규제대안2	업계 부담 완화	전문성이 부족한 전문경영인 선임에 따라 예산 집행의 부적정 등 단체 운영상 문제 발생, 이로 인해 단체의 대외적 위상이 저하될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방송작가협회	'26.6.10./저작권국 회의실/대면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 마련 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기를 희망	수용/ '26.7.9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
저작권신탁관리단체 · 보상금수령단체	'26.7.9./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대면	전문경영인 자격요건 중 저작권 위탁관리업체 또는 보상금수령단체 재직자 제한 단서 규정 삭제 필요 (한국방송작가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불수용/ 전문경영인제 기 도입 단체의 내부 규정(해당 단체 재직자는 퇴직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응모 가능)과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선택) 전문경영인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대안1 선택
- (근거) 저작권법 개정('26.4.28.)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전문경영인제 도입 의무 근거가 신설되어 '26.10.29.부터 본격 시행 예정
 - － 법에서 전문경영인의 자격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규정할 필요
- 전문경영인제 기 도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유사하게 설정

3. 규제목표

-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전문경영인의 최소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전문경영인의 전문성과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대외적 위상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전문경영인제를 도입·운영중인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및 보상금수령 단체의 현황을 고려하여 유사한 자격요건을 설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전문경영인의 최소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어려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는 중앙회 전무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자격요건)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무이사는 중앙회 또는 농업·축산업이나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산림조합법 시행령」에서는 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0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 「염업조합법 시행령」에서는 조합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염업조합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염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염업과 관련된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전문경영인의 자격요건 규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규제대안 1 : 전문경영인제 의무 도입 대상 단체의 기준 설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시행규칙의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가 선임해야 하는 전문경영인의 최소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 선임 기반을 마련하고 단체 운영의 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전문경영인의 자격요건 기준을 정의하는 것으로, 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경영인을 기선임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단체의 기존 행정·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전문경영인을 선임하므로, 규제 집행을 위한 별도의 조직·인력 없이 행정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대상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보상금수령단체로 한정되므로 규제 시행에 따른 별도의 예산 소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저작권법」 개정('26.4.28.)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보상금수령단체 의견수렴('26.7.9.)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규칙 개정 이후 규제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저작권법 일부개정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전문경영인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 선임 기반 마련과 단체 운영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내용으로 동 규제를 적용함이 타당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시행규칙의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가 선임해야 하는 전문경영인의 최소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 선임 기반을 마련하고 단체 운영의 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전문경영인의 자격요건 규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보상금수령단체
활동제목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 선임
비용항목	행정적 부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일반 현황) '26년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13개(문체부 허가, 지정 기준) ○ (근거) 단체 정관 및 내부규정(전문경영인 선출 규정)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등 저작권, 조직 경영·관리, 행정 업무 종사자
활동제목	전문경영인 채용 공고 응시 및 합격
편익항목	전문경영인으로 선임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 (일반현황) 3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전문경영인 선임('26년 8월 현재) ○ (근거) 단체 정관 및 내부규정(전문경영인 선출 규정)